

의안번호	2210754
의 퇴 인	김윤덕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C3115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 제5조)	90	-	-	-	-	90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가유산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7조(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유산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전담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13조(창업 및 유통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국가유산산업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함	재량규정
7	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2항)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9	안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산업 및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산산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개발·활용 등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9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국가유산청장은 이용 활성화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공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0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2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연구 촉진)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4	안 제23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24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운영)	국가유산청장은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활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안 제6조(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	- 실시 중
3	안 제7조(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 실시 중
4	안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	- 실시 중
5	안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	- 제정안에 따라 전담기관이 수행하기로 규정된 업무는 대부분 실시 중인 사업으로서, 전담기관 지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6	안 제13조(창업 및 유통 지원)	×	- 실시 중
7	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 실시 중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8	안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 실시 중
9	안 제18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	- 실시 중
10	안 제19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	- 실시 중
11	안 제20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	- 실시 중
12	안 제22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연구 촉진)	×	- 실시 중
13	안 제23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	- 실시 중
14	안 제24조(국가유산디지털플랫폼의 구축·운영)	×	- 실시 중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안 제6조),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안 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안 제10조), 창업 및 유통지원(안 제13조),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14조),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안 제16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안 제18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안 제19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안 제20조),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연구 촉진, 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안 제23조), 국가유산디지털플랫폼의 구축·운영(안 제24조)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특히,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안 제18조~안 제20조, 안 제22조~안 제24조에 따른 사업은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동일하게 규정된 내용으로서, 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재정수반요인	현행 사업(2025년 기준)
안 제6조(국가유산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2억원)
안 제7조(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 국가유산(문화재)산업조사(2억원)
안 제10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문화유산법」 제6조의2(문화유산의 연구개발) - 국가유산 스마트 보존·활용 기술 개발(R&D)(93억원) -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 개발(R&D)(43억원)
안 제13조(창업 및 유통 지원)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일자리 박람회(3억원)
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236.14억원)
안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 세계국가유산산업전 및 일자리 박람회(3억원)
안 제18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문화유산법」 제22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정책의 추진) ~ 제22조의2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 실감형 국가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33억원) - 사회적 약자 배려 디지털 기반 조성(14억원) - 신라왕경 디지털복원(45억원) - 국가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30억원) - 국가유산 디지털 대전환(정보화)(135억원)
안 제19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안 제20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안 제22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연구 촉진)	
안 제23조(국가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안 제24조(국가유산디지털플랫폼의 구축·운영)	

자료: 국가유산청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유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025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표 3]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기본계획 수립 (제5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